

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시립마리공동체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로,

나.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'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용산구 소재(비공개 대상 시설)
- 시설규모 : (건물면적) 226.5m², 지상4층(총 10호 중 3호)
- 시설용도 :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주거·자립 지원
- 인력운영 : 4명(시설장 1, 상담원 3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5년(2026. 1. 1. ~ 2030. 12. 31.)

○ 위탁사무

-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신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사·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
-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·자활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
-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

○ 소요예산(안) : 277,089천원('25년도)

- 인건비 212,189천원, 사업비 25,610천원, 운영비 등 39,290천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※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5.6.26.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-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8조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시립마리공동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(공모)추진계획
(다문화담당관-6244, 2025.5.26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최초위탁	3년 (‘09.11.01.~’12.10.31.)	(사북)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	공개모집	
2차 위탁	3년 (‘12.11.01.~’15.10.31.)	(사)참여성 노동복지터	공개모집	
3차 위탁	5년 (‘15.11.01.~’20.10.31.)	(사)참여성 노동복지터	공개모집	
4차 위탁	5년 (‘21.1.~’25.12.)	(사)결혼이민 가족지원연대	공개모집	수탁기관명 변경(기관동일)

라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을 긴급히 보호하고, 의료·법률·통번역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특성상,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.
- 특히 대사관, 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이주민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, 전문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

제8조(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·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,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이주여성 그룹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
재위탁(공모)추진계획(다문화담당관-6244, 2025.5.26.)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선영 (☎ 2133- 8694)